#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5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박주민·서영석·박민규

박홍근 • 이언주 • 임미애

허 영ㆍ이용선ㆍ송옥주

최민희 • 이광희 • 민형배

양부남 • 박희승 • 김문수

김영화 • 조인철 의원

(17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인터넷·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 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 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제15조"를 "제15조 또는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15조 또는 제15조의2"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 접수 등) 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에 관한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도로교통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2. 「도로교통법」 제85조·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 허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받는 사람
  - 3.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접수 결과를 통보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 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접수 및 통보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후단 중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장기등기 증희망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

업무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4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	3	
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		
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	<u>제1</u>	
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u>5조 또는 제15조의2</u>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u>제</u>		
<u>15조</u> 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생 략)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②	
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		
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	1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		
시( <u>제15조</u> 에 따라 장기등기증	제15조 또는 제15조의2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 5. (생 략) <u><신 설></u> \_\_\_\_\_

----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 접수 등) 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장기등의망자등록신청에 관한

1. 「도로교통법」 제83조에 따 른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 려는 사람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도로교통법」 제85조・86
  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하는 경우: 운
  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또
  는 갱신 발급 받는 사람
- 3.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실

시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 를 받는 사람

②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 항 각 호의 사람이 장기등기증 희망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그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접수 결 과를 통보받은 국립장기이식관 리기관의 장은 등록을 하고 지 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 은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접수 및 통보 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신청인 에 대한 통지의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

사판정의 신청) ①·② (생 사판정의 신청) ①·② (현행과

랴	)
$\neg$	,

-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생략)
-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 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생 략)

같음)
3
1. (현행과 같음)
2
<u>장기등기증희망자</u>
④ (현행과 같음)